

동양 밸류스타 주식 투자신탁 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양 밸류스타 주식 투자신탁 1 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동양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양 밸류스타 주식 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명	동양 밸류스타 주식 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회사명	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보증권 (☎1544-09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신영증권 (☎1588-8588, www.shinyoung.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메리츠증권 (☎1588-3400, www.imerit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하나대투증권 (☎1588-3111, www.daetoo.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한화증권 (☎1544-8282, www.koreastock.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동양종합금융증권 (☎1588-2600, www.myasset.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 한누리투자증권 (☎3777-8000, www.hannuri.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키움증권 (☎1544-9000, www.kiu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www.etrade.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 부산은행 (☎1588-6200, www.pusanbank.co.kr)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0-38 •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유진투자증권 (☎1588-6300, www.eugenef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우리투자증권 (☎987-6543, www.wooriwmku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푸르덴셜투자증권 (☎1588-4588, prucyber.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 신흥증권 (☎080-7733-080, www.sh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SK 증권 (☎1588-8245, www.pride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삼성증권 (☎1588-2323, www.samsungfn.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 2 가 6

- **CJ 투자증권** (☎1588-7171, www.cjcyber.com)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 **한국투자증권** (☎1544-5000, www.hantutam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대우증권**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 **대신증권** (☎1588-4488, www.dashin.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한양증권** (☎1588-8245, www.hygood.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 **부국증권** (☎368-9200, www.bookook.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현대증권** (☎1588-6611,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유화증권** (☎3770-0114, www.yh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KGI 증권** (☎3770-9200, www.kgieworld.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 **동부증권** (☎1588-3322, www.winne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미래에셋증권** (☎1577-9300, www.miraeasse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 **브릿지증권** (☎1566-0900, www.bridgefn.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가 198
- **기업은행** (☎1588-2588, www.ibk.co.kr)
서울시 을지로 2 가 50
- **대구은행** (☎1588-5050, www.daegubank.co.kr)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 가 118
-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 **교보생명** (☎2000-2007, www.kyobo.co.kr)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가 1
- **NH 투자증권** (☎1588-4288, <http://www.sejongiz.co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588-2100, www.nonghyup.com)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굿모닝신한증권 (☎1588-0365, http://www.goodi.com)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 토러스투자증권 (☎709-2300, http://www.taurus.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10월 20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p>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p> <p>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tongyangfund.com)</p> <p>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p>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 쪽)

1. 명 칭 : 동양 밸류스타 주식투자신탁 1호 (자산운용협회 표준코드 : 67580)
2. 신탁계약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3. 종 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동양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 정보 (☞본문 2~5 쪽)

구 분	주 요 내 용
1.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 - 주식, 채권, 파생상품, 기업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주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함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음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운용 -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있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
3.주요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채권 및 어음 등 투자증권에의 투자로 주식시장,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및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및 재무상황변동에 의한 주식가치 변화 위험이 있음
4.투자위험에 적합한투자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주식시장 변동성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과 자산운용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tongyangfund.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08.10.21 기준)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펀드수	다른운용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성우	44 세	주식운용팀장	74	1 조 8,335 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 레오투자자문 상무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비교지수(KOSPI 지수)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단위:%] 설정일 이후
	07.10.22 ~08.10.21				07.04.12 ~08.10.21
투자신탁	-41.51				-9.54
비교지수*	-39.29				-14.52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6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ClassA	Class C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1%
	환매 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90일미만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75%
		판매회사보수	연 0.75%
		기타보수	연 0.052%
		합 계	연 1.552%
	기타비용		실비(연 0.04%)
	총보수·비용비율		연 1.552%+실비
			연 2.552%+실비

주1) 환매수수료는 신탁계약기간 30미만 또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 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등 (2008.10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을 부담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로부터 2009.12.31일까지 3년이상의 적립식 계좌로 가입하여 이후 납입한 금액(분기 300만원, 연12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투자신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상세는 본문을 참조 바랍니다.)

3. 매입 및 환매절차

구 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 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D+1 기준가격 적용</p> <p>지금납입 (3시 이전)</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D+2 기준가격 적용</p> <p>지금납입 (3시 경과후)</p>
환 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D+3 기준가격 적용</p> <p>환매청구 (3시 이전)</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D+3 기준가격 적용</p> <p>환매청구 (3시 경과후)</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본문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동양 밸류스타 주식투자신탁 1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종류형**
- 4. 자산운용회사 동양투자신탁운용(주)
-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 '07.4.12 최초설정
 - '07.4.13 약관명칭 변경(동양 밸류포커스 주식투자신탁 1호 → 동양 밸류스타 주식투자신탁 1호)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2년전	2년6개월전	3년전
	08.10.21	08.04.21	07.10.21	07.04.21	06.10.21	06.04.21	05.10.21
수탁고	2,236	3,277	2,817	78			
증가율*	-31.76	16.30	3,499.01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기업어음 및 유동성자산 등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주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138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 회사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의 평가지표 적용, 회사의 내재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 편입
 - 거래량, 단기변동성 등에 연연하지 않고 중, 장기관점으로 접근하여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어 주식이 본질가치에 도달했을 경우 이익실현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시장 위험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 채권 및 어음등 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이 상품은 주식시장,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는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을 주식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투자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영업환경 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본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식시장 변동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구분	수준	개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투기등급까지 포함),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매우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매우 큰 폭의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발행자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에 까지 투자하므로 유동성, 결제불이행 등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2등급	높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BBB-),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심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 주식에 30%이상~60%미만 투자하는 펀드

3등급	중간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주식, 회사채(BBB-),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이 종류의 기초자산의 가치는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심각한 변동을 보이며, 특히 주가는 개별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며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 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중간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주식에 30% 미만 투자하는 펀드
4등급	낮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국공채, 회사채(A등급)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시장금리상승에 의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 위험이 수반되며,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변동과 발행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국공채 및 신용등급 A등급 이상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현금, 단기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AA수준)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을 추구하지만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리변동과 같은 시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펀드의 가치는 그들 각각의 기초투자자산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에서: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MMF 펀드 등

이러한 위험 등급은 당사에서 예시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tongyangfund.com)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주식운용팀>

성 명	나이	운용 경력
김성우	64년생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 레오투자자문 상무

김범진	71년생	- 동양종합금융증권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이근연	72년생	-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채권운용팀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운용역
박세중	77년생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 상기 인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 3 부.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자산운용회사'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연도별

<비교지수 : KOSPI 지수>

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07.10.22 ~08.10.21	07.04.12 ~07.10.21			
투자신탁 1)	-41.51	47.08			
비교지수 2)	-39.29	30.18			

나.연평균수익률

[단위:%]

기 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07.10.22 ~08.10.21				07.04.12 ~08.10.21
투자신탁	-41.51				-9.54
비교지수*	-39.29				-14.52

III. 수수료·보수, 과세

1.수익자에게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비고
	Class A	Class C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 1%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 Class A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납입금액의 1%를 선취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수익증권입니다.

2.투자신탁에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비용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비고
	Class A	Class C	
자산운용회사보수	연 0.75%	연 0.75%	매3개월
판매회사보수	연 0.75%	연 1.75%	매3개월
수탁회사보수	연 0.04%	연 0.04%	매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2%	연 0.012%	매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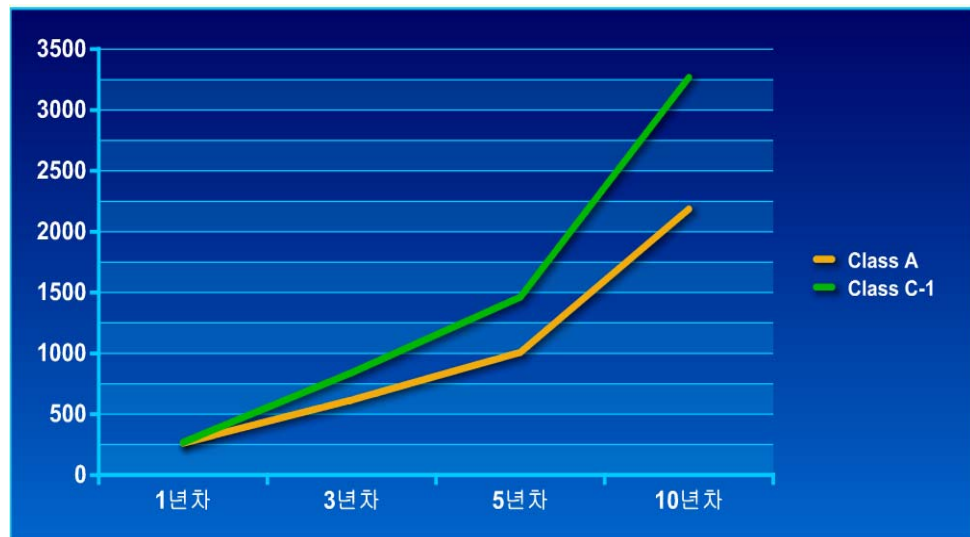
기타비용	실비 (연 0.04)%	실비 (연 0.04)%	사유발생시
총 보수 비용비율	1.592%	2.592%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유사펀드의 실적을 참고로 하여 그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는 신탁회계에서 비용계정이 아닌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기타비용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관하여는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예시(단위:만원)

구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263	616	1,008	2,186
Class C	268	840	1,462	3,26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7%,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만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등(2008.10 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장기 적립식 가입자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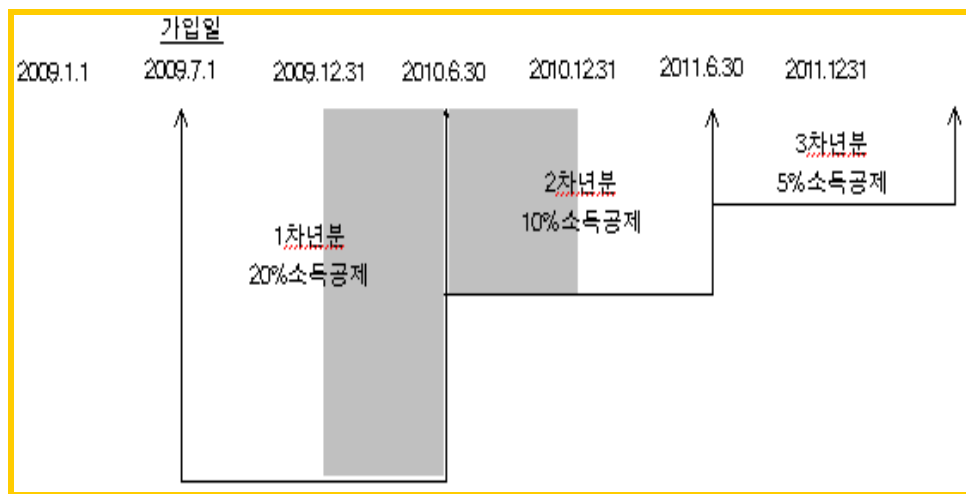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 년간의 3 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 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3 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 연간 1,200 만원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5.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가 2009. 7.1 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 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 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수익증권 판매기준

이 투자신탁은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율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종의 수익증권 중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가. Class A 수익증권 수익자 :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담)

가. Class C 수익증권 수익자 :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판매회사는 Class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합니다.

○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때에 수익증권 납입금액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 를 부과합니다

2) 매입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 15시(오후3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15시(오후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약관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매입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1.매입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 간접투자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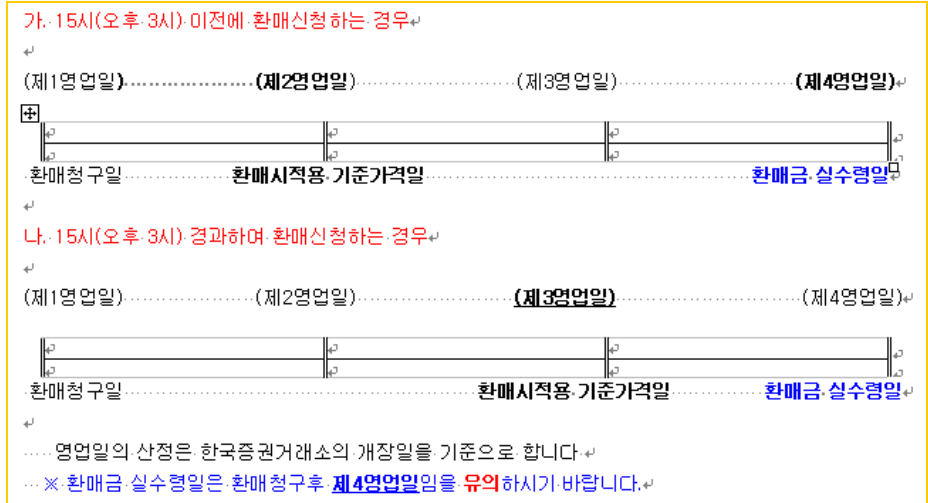
- 환매절차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 (토요일은 제외)에는 약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15시(오후3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15시(오후3시)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예시>



- 환매수수료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2.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일부환매
 1.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부분환매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 (환매연기 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3.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

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자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환매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2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익등의분배
1.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이익분배금
1.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2. 이익분배금으로 당해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약관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 지급
1.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효등
1.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사항은 ‘제 2 부.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중 ‘3.분배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 기본운용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등에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 회사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사의 평가지표 적용, 회사의 내재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 편입
 - 거래량, 단기변동성 등에 연연하지 않고 중, 장기관점으로 접근하여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어 주식이 본질가치에 도달했을 경우 이익실현

■ 종목선정기준

- PER, PBR, EV/EBITDA 등 분석을 통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발굴
- 시장평균보다 높은 배당수익이 예상되는 종목
- 수익성장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되어 기업이익이 증가 예상 종목
- 매출이 증가되어 회사의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 브랜드, 경영진 등 뛰어난 무형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등에 투자

2.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상품은 주식시장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유가증권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변동위험·이중가격 위험	시장의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환매청구시의 기준가격과 환매일의 기준가격이 동일하지 않아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p>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기타위험	<p>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 주식	60%이상	<p>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증권 또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와 주식예탁증서(이하 “주식”이라 한다) (2)(3)</p> <p>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p>
2. 채권	40%이하	<p>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p>
3. 어음	40%이하	<p>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p>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p>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5.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p>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p>
6. 수익증권	5%이하	<p>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p>

(상장지수간 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 권)	(30%이 하)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 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투자증권 의 대여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주식 및 채권관련 장 내파생상품	(위탁증 거금합 계액) 15% 이 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 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 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9. 환매조건 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 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10. 투자증권 차입	20%이하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 다.
1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를 말한다)
12. 금융기관 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13. 기타 사 항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자산과의 거래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약관제37조제1항제 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제 2 조제 7 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37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이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 월간은 제 37 조제 1 항제 8 호, 이 조 제 1 항제 2 호본문 및 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평가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 할 수 있음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에서 정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채권중개회사 ■ 채권중개회사 선정기준

선정기준

○ 선정기준

가. 거래상대방(증권사 및 선물사)의 선정은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가중치)

- 재무건전성 : 30%(절대평가)
- 시장점유율(M/S) : 10%(상대평가)
- 매매체결능력 : 30%(상대평가)
- 리서치 및 시장분석서비스 : 25%(상대평가)
- 운용지시처리의 신속,정확성 : 5%(상대평가)

※ 당사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는 가항의 평가기준이외의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평가방법

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실시한다.

나. 절대평가항목이외의 상대평가 항목은 각 운용역, 트레이더 및 운용지시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다. 평가대상은 재무적 안정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로 한정할수 있다.

○ 평가에 따른 주문배분

가. 평가점수의 상대비율에 따라 A,B,C그룹으로 분류한다.

나. 상대비율이 상위 20%를 A그룹, 상위 20% - 50%를 B그룹, 50%미만을 C그룹으로한다.

다. 당사 전체거래량을 기준으로 A그룹에 60%이하, B그룹에 40% 이하, C그룹에 20%이하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장 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수 있다.

라. 다항의 배분비율에도 불구하고 관계증권사에 대한 배분비율은 그룹과 관계없이 법정비율을 한도로 한다.

■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매월평가하여 선정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 선
정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기업분석자료 제공	기업분석자료 내용 및 투자의견의 정확성 종목추천 및 Update	40
기업방문/세미나	기업방문 주선 및 세미나 주관	20
투자전략자료 제공	투자전략의 정확한 자료 제공	10
주문체결/매매협조	신속한 주문체결 및 매매 협조	10
시장정보 제공	투자 아이디어 및 시장정보 제공	10
수수료율	낮은 수수료 적용	10
합 계		100

평가가준에 따른 주문 배분

① 평가점수의 상대비율에 따라 A, B, C그룹으로 분류한다.

② 상대비율이 상위 20%를 A그룹, 상위 20%~50%를 B그룹, 50% 미만을 C그룹으로 한다.

③ 당사 전체 약정을 기준으로 A그룹에 60% 이하, B그룹에 40% 이하, C그룹에 30% 이하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 동양종금 B/D 14 층 02-3770-1300
회사연혁	2000. 6.2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24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 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1 영업개시 2000. 9. 5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6. 12. 31 수탁고 6 조 4,753 억

2. 주요 업무

- 의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
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
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
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
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쥬아이타스에 위탁하였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

(단위:백만원)

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구분	제7기	구분	제7기
유동자산	24,788	영업수익	16,109
고정자산	8,101	영업비용	△8,649
자산총계	32,889	영업손익	7,460
유동부채	708	영업외수익	4
고정부채	353	영업외비용	50
부채총계	1,061	경상손익	7,414
자본금	20,000	특별손익	-
잉여금등	10,400	법인세비용등	2,158
자본총계	31,828	당기순손익	5,256

주) 7기: 06.4.1~07.3.31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구분	제8기	구분	제8기
현금/예치금	27,695	영업수익	22,618
유가증권	1,000	영업비용	14,056
유형자산	419	영업이익	8,561
기타자산	10,397		
자산총계	39,512	영업외수익	2
기타부채	1,740	영업외비용	41
부채총계	1,740	경상이익	
자본금	20,000		
잉여금등	17,772	법인세차감전이익	8,522
자본총계	37,772	당기순이익	5,943

주) 8기: 07.4.1~08.3.31(개정기업회계기준적용)

4. 운용자산 규모

(단위: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특별 자산	재간접	합계
10,868	16,455	25,178	13,451	16,890	2,793	1,156	1,689	88,481

(08.10.20 기준자료)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주식운용팀>

성명	나이	운용 경력
김성우	70년생	-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장 - 레오투자자문 상무
김범진	71년생	- 동양종합금융증권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이근연	72년생	-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채권운용팀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운용역
박세중	77년생	- 동양투신운용 주식운용팀

※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운용전문인력 기타 운용현황

<주식운용팀>

성명	운용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억원)
김성우	공동	70개	1조 8,057억
김범진			
이근연			
박세중			
계	공동	70개	1조 8,057억

II. 판매회사

1. 주요 업무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

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부산은행
주소 및 연락처	부산 동구 범일2동 830-38
회사연혁	1967.10 회사창립 1972.6 증권거래소 상장 2005.6 총수신15조 달성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4층 . 02-2168-0440
회사연혁	설립일: 2000.6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 2000.9

2. 주요 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 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월 자본금 : 30억원
한국채권 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02-399-3350	설립일 2000. 5월 자본금 : 50억원
NICE 채권 평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T 02-739-3590	설립일: 2000. 6월 자본금: 55.5억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 투자기구에 제공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의결사항

수익자는 전체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수익자총회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수익자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약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 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전일까지 자산운용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 수익자총회일 1 주일전까지 제 3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④약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봅니다.

반대수익자의 수익 증권매수청구권 ①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2. 잔여재산분배**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①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

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기준가격계산서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또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탁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수탁회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약관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수탁회사의 변경
-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への 통지
 - ②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의결권 행사

③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때 신탁약관의 환매일정에 따라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